

2021년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 신청 공고

조달청에서는 창업 및 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벤처기업의 전용 상품물인 '벤처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2021년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계획을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7일
조달청장

I 지정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 온라인 신청 시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
 -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6조에 따른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신청 제외 대상

- ▷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 ▷ 해당 업체가 지정받은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과 동일한 상품이거나 동일한 세부품명 상품
- ▷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 기타 추천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해야 함

1 지정 절차 개요

추천기관 추천받은 경우 해당

1. (추천기관 후보 상품 모집) 추천기관별 기준에 따라 별도 모집

- 1) 추천기관 리스트는 공고서 7페이지 참조
- 2) 추천받은 업체는 기술·품질평가 시 가점 2점을 받거나, 추천기관의 자체 평가기준에 의해 기술 또는 품질평가 면제 가능
- 3) 추천기관은 자체 일정에 따라 후보 상품 모집 후 4페이지 온라인 신청기간 전에 후보 추천

2. (후보 추천) 추천기관이 지정대상여부 검토, 자체평가 등 적격인 상품을 조달청에 추천

- * 단, 추천기관 사정 등으로 기술·품질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천기관 요청에 따라 조달청에서 평가할 수 있음

① (지정 신청) 벤처나라 홈페이지에서 직접 온라인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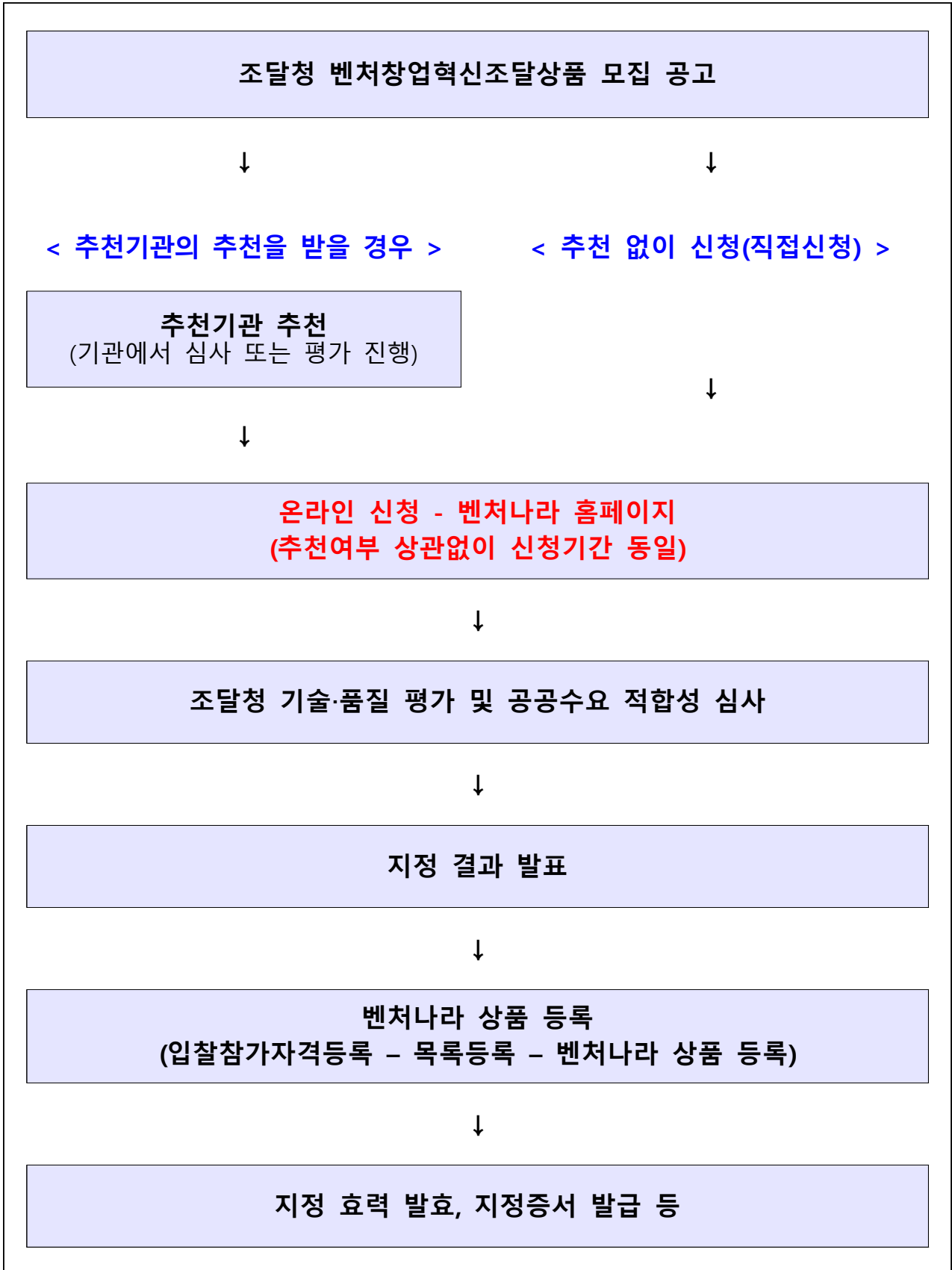
② (지정 심사) 신청 상품에 대해 기술·품질평가, 조달적합여부 등 심사

③ (지정 발표) 심사 결과 적격인 상품을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하고, 지정 결과는 벤처나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발표

④ (상품 등록) 지정된 제품은 추후 조달청 안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물품목록번호, 벤처나라 상품등록 등 등록절차 진행

※ 단, 지정 이후 벤처나라에 상품등록을 완료한 이후 지정 효력 발효, 지정증서 발급 및 지정마크 표시 허용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절차 흐름도 >



2 2021년 벤처나라 상품 지정 신청 일정

지정 회차	2021년
온라인 신청기간*	하단 일정표 확인 (추천기관 추천을 받은 경우, 직접 신청하는 경우 동일)
지정심사	하단 일정표 확인
지정 결과 발표	매월 지정심사 종료일에 벤처나라 공지사항에 게시 (발표일자는 예정이며 심사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추천기관 추천은 추천기관 자체 추천일정에 따라 진행 예정으로, 추천기관의 추천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기관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전 추천기관에 추천 여부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월		2월		3월	
온라인신청	01.07~01.15		02.01~02.10		03.02~03.17	
지정심사		18일~29일		15일~26일		18일~31일
	4월		5월		6월	
온라인신청	04.01~04.16		05.03~05.14		06.01~06.16	
지정심사		19일~30일		17일~31일		17일~30일
	7월		8월		9월	
온라인신청	07.01~07.16		08.02~08.17		09.01~09.14	
지정심사		19일~31일		18일~31일		15일~30일
	10월		11월		12월	
온라인신청	10.01~10.15		11.01~11.16		12.01~12.17	
지정심사		18일~29일		17일~30일		20일~31일

* 온라인신청은 신청 종료일 18시에 마감합니다.

3 지정 신청 방법

- (선택사항 - 추천기관 추천) 추천기관별 별도 모집 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추천기관 접수처에 추천기관이 요구하는 신청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

*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업체는 추천 회차 확인 후 온라인 신청기간에 신청

- (벤처나라 온라인 신청) 모든 서류는 '파일'화하여 벤처나라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시 각 항목별 첨부파일(10Mb제한) 등록

- (필수) 지정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온라인 신청서식)
- (필수) 지정 신청서(온라인 신청서식)
- (필수) 상품설명서[별표2 붙임3 서식](온라인 신청 시 서식 제공)
- (필수)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
- 벤처기업 확인서(단, 벤처기업인 경우에만 제출)
- 기술 또는 품질 평가 면제 대상인 경우 관련 소명 자료*

* 인증서 사본 또는 관련 종합평가보고서(예 : 기술성공확인 공문, 인증결과 공고 등)

* 기술 또는 품질평가 면제 대상은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8조 내지 제10조 확인

- 평가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기술·품질 평가 증빙자료

* 기술 평가 증빙자료 : 특허, 실용신안이 있는 경우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 품질 평가 증빙자료 : 품질 인증서 사본 또는 인증 관련 종합평가 보고서 및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단,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품질관리 계획서)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KC인증, 형식 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 적합 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인증의 경우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관련 인증 필수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 후 '확인' 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증서(벤처나라 상품 등록 완료 후 직접 온라인 출력 가능), 인증마크 부여(벤처나라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벤처나라 상품 등록 및 거래에 필수적인 절차(입찰참가자격 등록, 물품목록번호 등록, 벤처나라 이용 방법 등) 관련 교육
- 벤처나라 홍보 카다로그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홍보, 상품 동영상 제공 등
 - * 홍보 카다로그 제작·배포는 매년 예산사정 및 관련 부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벤처나라 등록업체 중 실적, 기술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대상 업체를 조달청이 자체 선별
-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시 벤처나라 전용 부스 운영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벤처나라 실적 기업 신인도 가점 1점 부여
-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원의 무담보 보증보험 제공
-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관급자재 선정 시 벤처나라 등록 제품 우대
- 정부조달에 진입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절차, 벤처나라 등록 등 상품 거래에 필요한 과정을 조달청 벤처나라 담당직원이 1:1 전담 지원

< 참고 > ① 추천 관련 문의처, ② 평가 면제 대상, ③ 지정신청 제출서류

참고1

추천 관련 문의처

구 분	담 당 기 관	연 락 처
직접신청 및 제도 문의 [기술·품질평가(동시) 면제, 미추천 상품으로 조달청에 문의]	조달청 융복합상품구매담당관실	042-724-7193, 7492, 7506
추천기관 - 중앙기관 (예산지원, 공동기술개발 등 해당 기관 유관업체만 추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6
	각 지방 조달청	각 지방청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과)	각 지방청
	국방부(한국조달연구원 국방조달지원센터)	02-796-8234 (내선 602)
	특허청 특허사업화담당관	042-481-5566
추천기관 -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디지털창업과 (서울창업허브 접수)	02-2115-2024
	강원도 경제진흥과	033-249-2963
	경기도 창업지원과 (경제과학진흥원 접수)	031-259-6187
	경상남도 경제기업정책과	055-211-3364
	경상북도 중소기업노동과	054-880-2693
	전라남도 중소기업과	061-286-3782
	전라북도 회계과	063-280-2328
	충청북도 전략산업과	043-220-3453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4082
	대구광역시 창업진흥과	053-803-3563
	대전광역시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12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업과	051-888-4414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032-440-4298
	울산광역시 중소기업과	052-229-3092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	041-635-3446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064-710-4182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163
	추천기관 - 공공기관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3405-460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042-865-883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24
한국수자원공사		042-629-2512
중소기업 유통센터		02-6678-9382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		각 지역 센터 대표번호
한국환경공단		053-269-4057

□ 기술·품질평가 면제 대상(관련규정 제8조)

1. 성능인증(EPC) 제품
2. 신제품(NEP)
3.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GS) 제품
4. 신기술(NET) 제품(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 녹색인증제품
6.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7. 창조경제혁신센터 BE-GOODS지원사업 선정제품
8.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기술·품질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추천기관에서 육성하는 신기술 산업 제품 또는 추천기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 등에 대해 평가 면제 여부를 벤처나라 담당과장과 협의 가능)

□ 기술평가 면제 대상(관련규정 제9조)

1.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2. 산업융합품목 지정 제품
3. 공공기관 개발선정품(단,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함)
4.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단,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함)
5.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기술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추천기관에서 육성하는 신기술 산업 제품 또는 추천기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 등에 대해 평가 면제 여부를 벤처나라 담당과장과 협의 가능)

□ 품질평가 면제 대상(관련규정 제1조)

1. 우수재활용인증제품(GR)
2. 환경표지(환경마크) 제품
3. 성능인증(K마크) 제품
4. 고효율에너지 인증 표시 제품
5. 품질보증조달물품
6. 지능형로봇 품질인증(R마크) 제품
7. 보건제품 품질인증(GH) 제품
8. 부품소재 전문기업 신뢰성 인증 제품
9.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품질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추천기관에서 육성하는 신기술 산업 제품 또는 추천기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 등에 대해 평가 면제 여부를 벤처나라 담당과장과 협의 가능)

참고3

지정신청 제출서류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 주의 : 온라인 신청 시, 제출 항목에 맞지 않는 서류, 신청제품과 관련 없는 서류 제출 시 '반려' 처리됨

번호	서류명	비고
1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붙임1)	온라인 서식
2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신청서(붙임2)	온라인 서식
3	○ 상품설명서(붙임3 참고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서식제공)	필수
4	○ 사업자등록증	필수
5	○ 벤처기업 확인서	벤처기업인 경우 제출
6	○ 기술·품질 평가 면제 관련 소명자료 -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평가면제 대상인 경우 제출
7	○ 기술 평가 증빙자료 -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있는 경우 제출
8	○ 품질 평가 증빙자료 - 품질 인증서 또는 KC인증 등 품질관련 인증 사본 또는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주의 :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경우 반드시 제품안전정보센터에 확인 후 관련 서류 제출 필수) - 위 사항에 해당이 없고, 품질관련 인증서 등이 없는 경우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필수
9	○ 기타 증빙 자료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 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있는 경우 제출 (단, 법정 의무인증은 반드시 제출)
<p><참고>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시 입찰참가자격 및 직접생산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정상품에 대한 제조업체등록-물품식별번호 또는 공급업체등록 - OEM 물품식별번호를 받은 제품에 한해 벤처나라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제조업체로 등록하고 직접생산증명확인서를 보유한 업체만 등록이 가능합니다.</p>		

<주의>

- 제출 서류는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동 규정 제7조의2 제3항에 따른 보완사항은 마감일 이후 제출 가능)

[별표 2 (제7조의2 제2항)]

상 품 설 명 서

- 1) 동일한 상품의 서로 다른 규격(또는 모델)을 신청하고자 하실 때는 상품설명서는 하나로 작성해주시고, 상세모델은 상품설명서의 신청 모델(규격) 목록란에 모두 기재
(Ex. 컴퓨터 / 상세모델 수 : 5종일 경우 상품설명서 하나에 상세 모델은 목록란에 기재)
- 2) 2개 이상의 상품(상품 종류가 다른 경우)를 신청하실 때는 상품설명서 2개 상품별 상세모델은 상품설명서의 신청모델(규격) 목록란에 모두 기재
(Ex. 컴퓨터 / 상세모델 수 : 5종, 프린터 / 상세모델 수 : 2종, 키보드 / 상세모델 수 : 3종일 경우 상품설명서 3부 각 상품별 상세모델은 목록란에 기재)

상품명	
상품의 일반적 용도 및 기능	
어디에 쓰이는 어떠한 물건인지 신청 상품을 간략히 소개(1/4쪽 정도)	
상품 사진	
신청 상품의 형태,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상품의 특징

타 제품과 구별되는 차별적 특징, 성능을 열거식으로 기재(1/3쪽 정도)

- ①
- ②
- ③

상품에 적용된 기술 내용

신청 상품에 어떠한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그 기술이 정부 정책방향 및 기술트렌드에 부합하는지,
그 기술이 신청 상품의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기술이 종래 기술에 비해 어떠한 혁신성이 있는지,
그러한 기술을 도출하고 적용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기술이 적용되어서 어떤 특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결과적으로 일반 제품에 비해 성능 면에서 무엇이 더 좋은지 등을 자유롭게 기재
(2/3쪽 정도)

일반 제품과 대비되는 차별적 품질·성능

사용자 편의성, 안정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에너지 절약성, 보안성, 환경친화성
등 품질·성능에 대해 자유롭게 기재

신청 모델(규격) 목록

신청 상품과 관련된 모델(규격)이 1종인 경우라도 신청 모델(규격)목록 제출

※대표 모델과 나머지 모델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지 표로 정리

<예시>

번호	모델명	크기	재질	용량	비고
1	A	10	재질1	용량1	
2	B	50	재질1	용량1	
3	C	70	재질2	용량1	
4	D	100	재질2	용량2	

전회(前回) 차 심사와 대비되는 실질적 기술·품질 개선 사항

전회 차 심사 때 기술한 품질, 성능 이외에 실질적인 제품 개선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1/2쪽 정도)

실질적 제품 개선이 없는 경우 보완 내용에 '기존과 동일'로 작성하여 제출

<u>항목</u>	<u>기존 신청 내용</u>	<u>보완 내용</u>
①		
②		
③		
④		
⑤		

[별지 제3호 서식 (제7조 제7항)]

품질관리 계획서

본 품질관리 계획서 작성 및 제출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음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조달청 및 벤처나라 이용기관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업체명) :

대 표 :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공장		전화번호	
자본금		사업자등록번호		
종업원수	총 명		(품질관리 인력: 명)	
공장/생산 시설 현황	※ 주장비, 보조장비, 시험, 검사기기 등			
등록상품 생산실태	직접생산 부분 :			
	외주가공 부분 :		(외주 생산비율: %)	
상 품 명		세부품명		
제품의 내구성 및 수명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형식등록, 안전인증사항 등	※ 공산품 품질관리와 같은 일반적인 허가사항 이외에 신청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해 사전 또는 사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제도명, 허가받아야 하는 사항, 현재 상태, 향후 계획 등을 기재하고, 객관적인 관계 자료 첨부			

<p>품질 관리</p>	<p>※ 상품에 대한 품질기준, 품질검사 절차, 불합격품에 대한 조치 방법 등</p>
<p>자재 관리</p>	<p>※ 상품의 자재에 대한 관리 및 검사방법 등</p>
<p>공정 관리</p>	<p>※ 상품 생산 공정별 관리 방법, 관리 주기, 관리 기준, 공정의 자동화 정도 등</p>
<p>검사설비 관리</p>	<p>※ 시험검사 설비 보유 여부, 시험검사 방법, 검사 설비에 대한 교정검사주기 등</p>